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20260126-002KK
평가금액	9,666,457 원
평가기관 / 평가자	한비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권소영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8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한비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권소영	eyJhbGciOiJFUzI1Nils	2026-02-03 15:31: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53-3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문서번호: 2025-17133-A01)

감정평가서번호: 20260126-002KK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밝히다, 신뢰를 더하다

한비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HANBI APPRAISAL OFFICE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권소영

권 소 영



감정평가액	구백육십육만육천사백오십칠원정(W9,666,457.-)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문서번호: 2025-17133-A01)	감정평가 목 적	공매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차영환 (2025-17133-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의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2.02	2026.02.02	2026.02.0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 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 가
	토지	6 476x-- 26	토지	109.8461	88,000
			이 하 여 백		9,666,457
	합 계				₩9,666,45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물건의 개요

1. 토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²)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 상 지 세	개별지가 (원/m²)	비 고
1	왕림리 453-3	답	476 중 109.8461	농림	답	세로(가)	사다리형 평 지	47,600	-

※ 차영환 지분

2. 공법상 제한사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보호구역<농지법>

3.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없 음.

4.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없 음.

5.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며, 인접토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확인 측량 등을 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기호 2~4는 수인 공유 토지 중 '차영환' 지분만의 평가로 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미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소재 “신방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공매목적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법령 등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6년 02월 02일]로 함.

4. 실지조사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6년 02월 02일 실 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함.

5. 기준가치

가. 시장가치기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6.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가. 현황기준 원칙과 예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음.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7.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친 경우 그 내용 등

없 음.

8.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

없 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토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본건 토지는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가법(원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수익환원법(수익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는 제외하였음.

나. 개별물건별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 하되, 거래사례, 감정평가전례 등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다만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구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2026년 01월 01일]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 지 상 세	공시지가 (원/m ²)
A	왕림리 170-3	답	3,441	농림	답	세로(불)	세장형 평 지	43,600

2)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비교표준지	적용대상
A	기호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 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 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농림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12.01. ~ 2025.12.31.	0.088%	2025년 12월분
누 계 (2026.01.01 ~ 2026.02.02)	0.094% (1.00094)	$(1 + 0.00088 * 33/31)$ ≈ 1.00094

※ 2026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2025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지역요인 비교

1) 지역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환경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지세	경사의 방향
		경사도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지역요인 비교치 결정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행정적 조건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1.03	1.00	1.00	1.00	1.00	1.00	1.03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시 농로의 상태 등 가로조건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2003다 38207판결 (2004.05.14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가) 산정방법

(사례기준 표준지 감정평가) 사례가격×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시점수정

나) 인근지역 지가수준

구 분	지가수준(원/㎡)	비 고
유사토지	농림지역 내 ‘농경지’ 기준 60,000원/㎡ ~ 120,000원/㎡ 수준임.	-

다) 인근 감정평가전례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목적
							기준시점
a	신방리 OO-OO	답	1,679	농림	답	118,000	시가참고
							2024.11.20
b	왕림리 OO-OO	답	2,912	농림	답	94,000	담 보
							2024.06.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사례 선정

인근지역 내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상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사례를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선정함.

비교사례 선정	비교표준지(A)	사례 a
---------	----------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사례 a / 표준지 A]

구분	비교 사례	토지단가 (원/m ²)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산출 단가 (원/m ²)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누계		
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a	118,000	1.01755 ^{*1}	1.00 ^{*2}	0.80	0.89	1.00	1.00	1.00	1.00	0.712 ^{*3}	85,490	1.958
표준지 시점수정	A	43,600	1.00094								43,641	(85,490 / 43,641)	

*1 시점수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농림지역의 자가변동률, 2024.11.20.~2026.02.02.): 1.755%

*2 지역요인: 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제반 지역요인은 대등시 됨(1.00).

*3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등 열세함.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열세함.
	환경조건	유사함.
	획지조건	유사함.
	행정조건	유사함.
	기타조건	유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 지가수준 및 최근의 지역동향, 가격변동 추이, 경매통계분석 등을 참작하고 감정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유사 감정평가전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격차율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결정하였음.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표준지(A)	1.95
-------------	----------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43,600	1.00094	1.000	1.030	1.95	87,652	8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거래사례 선정

1) 선정기준

토지만의 거래사례이거나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래사례를 선정함.

2) 인근 거래사례

[출처: 부동산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토지 지목	토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가액(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가	왕림리 OO-OO	답	1,765	농림 (답)	150,000,000	84,986	2025.06.13

3) 비교 거래사례 선정이유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거래사례	적용대상
가	기호 1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기 호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거래사례 가	2025.06.13. ~2026.02.02	0.817% [1.00817배]	농림지역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거래사례와 상호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마. 개별요인 비교

기호	거래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가) 대비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유사함.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비교 사례	비교사례 토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84,986	1.00817	1.000	1.000	85,680	8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토지 시산가액 검토 및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1	88,000	86,000	88,000

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사정면적(m ²)	적용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지	기호 1	109.8461	88,000	9,666,457	차영환 지분
감정평가액(합계)				₩9,666,457.-	-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와 같이 결정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제 반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53-3	답	농림지역	6 476x-- 26	109.8461	88,000	9,666,457	차영환 지분
합 계								₩9,666,457.-	
				이	하	여	백		

토 지 평 가 요 항 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이용상황
7. 제시목록외의 물건

2. 교통상황
5. 접면도로상황
8. 공부와의 차이

3. 형태,지세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9. 기타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소재 '신방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등 농경지가 소재하는 농경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 외곽지역으로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이하임.

3. 형태,지세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임.

4. 이용상황

답으로 이용중임.

5. 접면도로상황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보호구역<농지법>

토 지 평 가 요 항 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이용상황
7. 제시목록외의 물건

2. 교통상황
5. 접면도로상황
8. 공부와의 차이

3. 형태,지세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9. 기타

7. 제시목록외의 물건

없 음.

8. 공부와의 차이

없 음.

9. 기타

- 기호 2~4는 수인 공유 토지 중 '차영환' 지분만의 평가로 지분의 위치확인 곤란하여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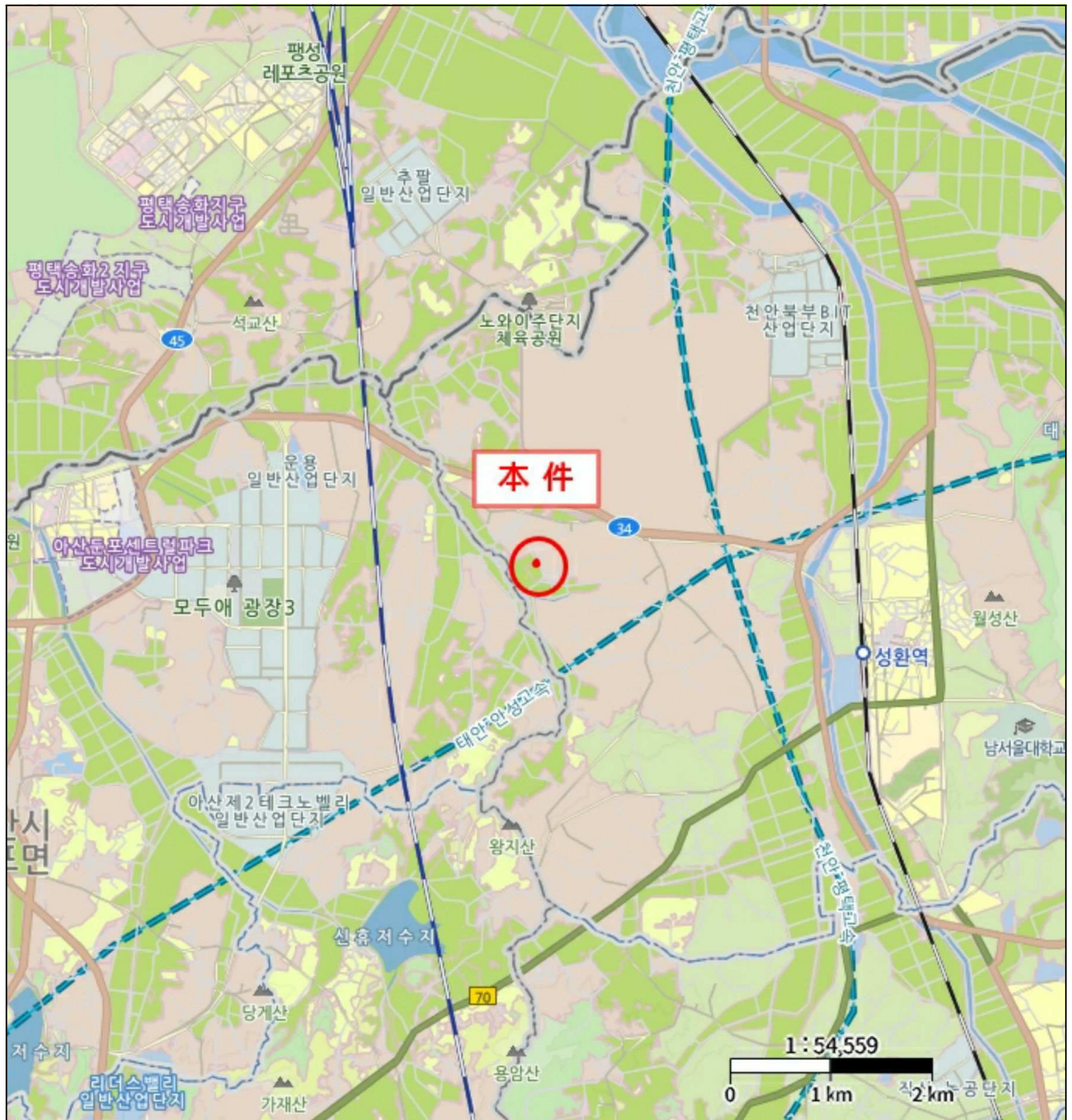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Page : 1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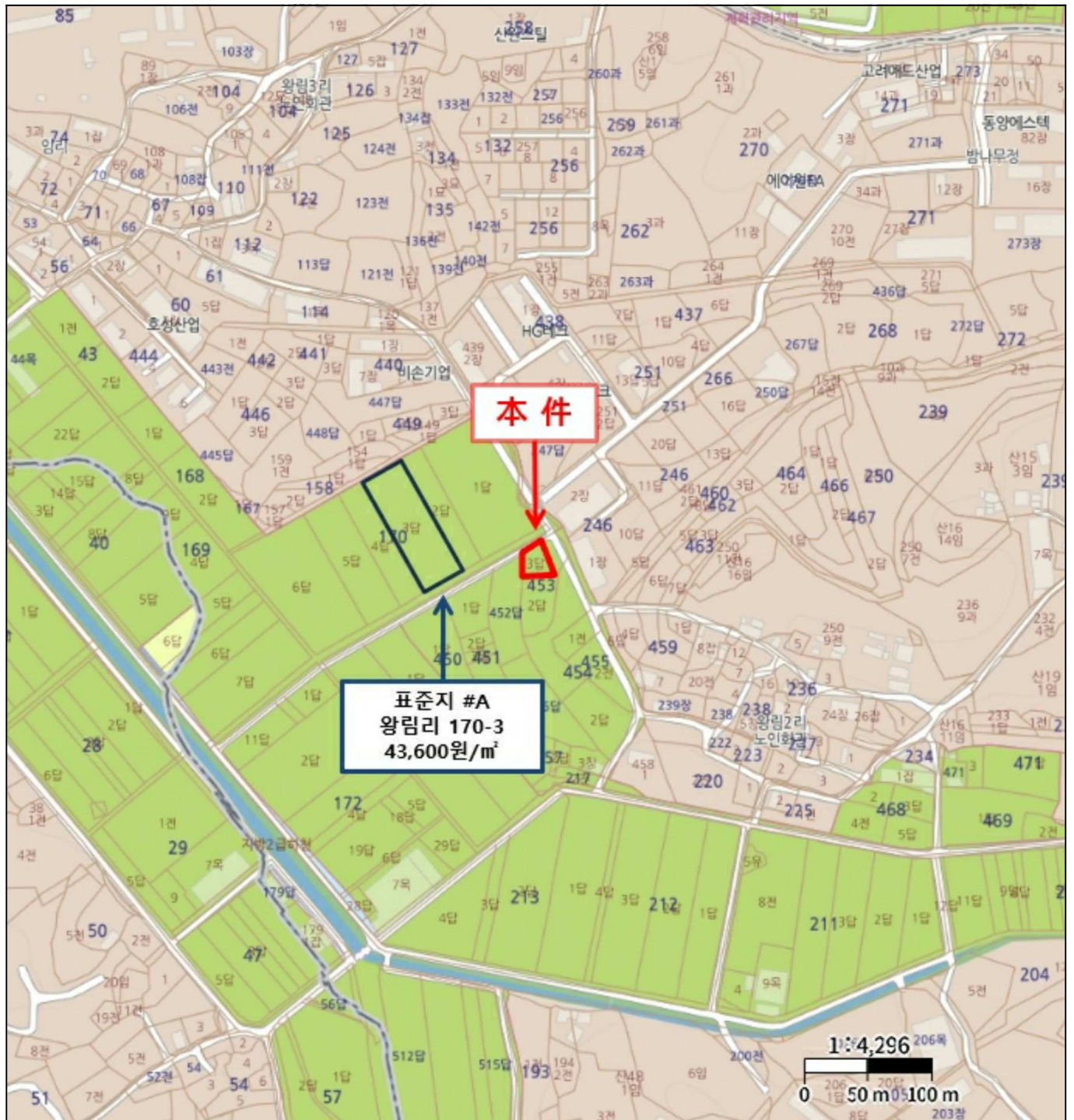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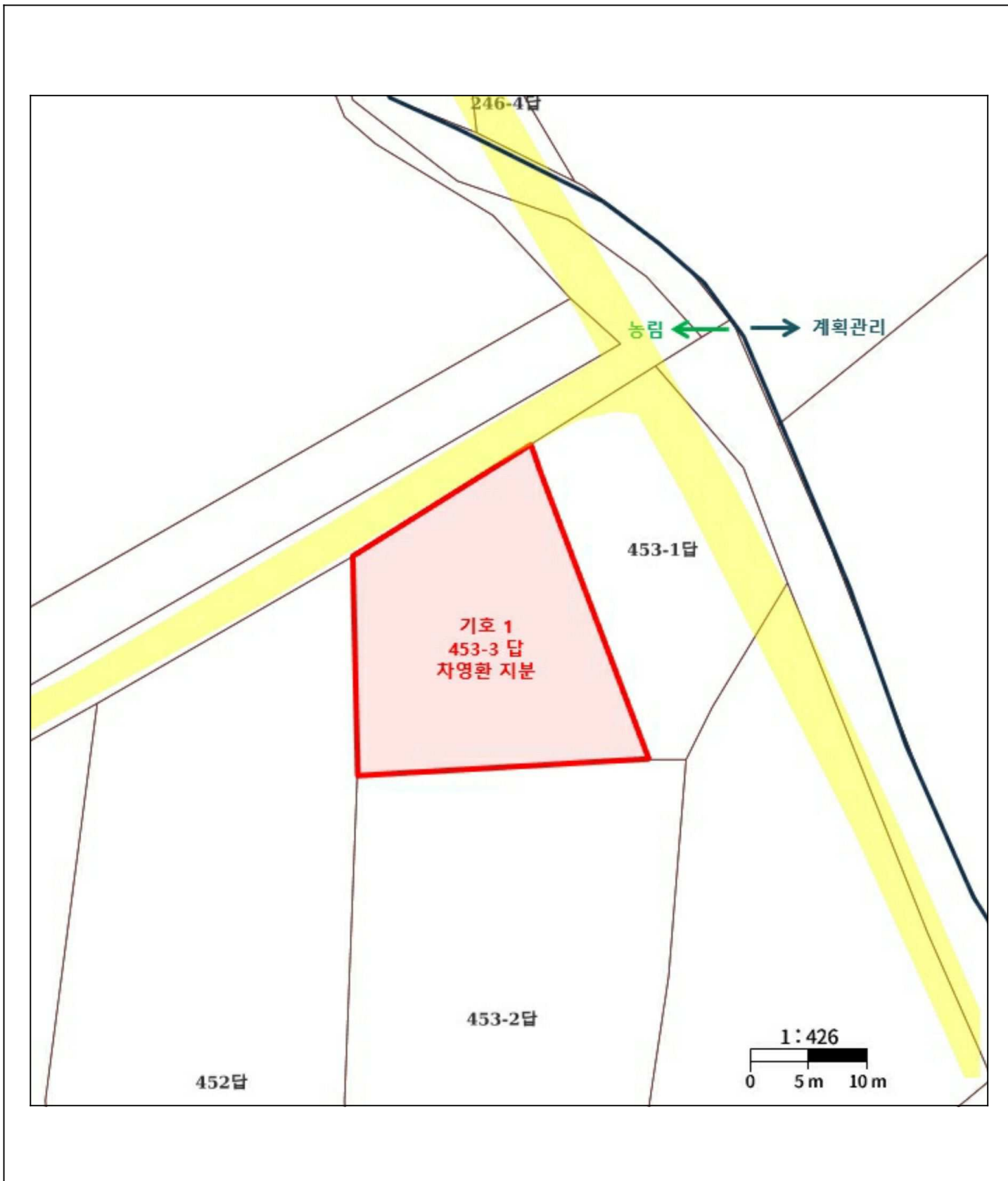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53-3



지 적 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북동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
(북서측에서 촬영)

회 보 서

우)105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일로 64 936호

TEL. 02-3159-7719

FAX. 02-6951-4344

문서번호 : 20260126-002KK

시행일자 : 2026-02-03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참 조 : 정은하 님

제 목 : 감 정 의 료 에 대 한 회 보

선결			지		
접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1. 저희 한비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1.26자 귀 제 『2025-17133-A01』호로 의뢰하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53-3 소재 물건 (2025-17133-A01)』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가치를 밝히다, 신뢰를 더하다

한비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HANBI APPRAISAL OFFICE

수수료 청구서

(전화: 02-3159-7719, FAX: 02-6951-4344)

문서번호 : 20260126-002KK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1.26 자 귀 제『

2025-17133-A01

』호로

의뢰하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53-3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00,000	기본수수료 ≒200,000
실	여 비	108,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3,200	
	기타 실비	2,000	
비	소 계	113,200	1,000원 미만 절사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313,000	
부 가 세		31,300	
합 계		344,3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344,300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하나은행 : 419-910161-22205(예금주:권소영)